[별지 제19호의3서식]<신설 1998.8.8>

(앞 쪽)

세 액 면 제 신 청 서				
신청인	①법 인 명		②사업자등록번호	
	③대 표 자 성 명		④법인등록번호	
	⑤본 점 소 재 지	(☎ :)		
⑥ 과 세 연 도	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	

신 청 내 용				
증여자(양도자)	⑦성 명		⑧주민등록번호	
	⑨주 소	(☎ :)		

양 도			증 여		
⑩자 산 명	⑪양 도 일 자	⑫양 도 일 자	⑬증여일자	⑭증여금액	⑮증여금액한도

감 면 받 을 세 액		
<16>산 출 세 액	<17>(⑮÷⑫)증여비율	<18>감 면 받 을 세 액

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7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※ 구비서류 :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7제11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 각 1부

22226-79011민 210㎜×297㎜

98.5.27.승인 (신문용지 54g/㎡)

작 성 요 령

1. 이 신청서는 수증자가 증여자별 별지로 작성하여 증여자의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증여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2. ⑫란 양도대금은 부채상환명세서(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10서식) <18>란 양도대금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.
3. ⑭란 증여금액은 부채상환명세서(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10서식) <20>란 증여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.
4. ⑮란의 증여금액한도는 ⑭란 증여금액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.
   ㉮ 수증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: 100분의 100
   ㉯ 중소기업외의 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 : 100분의 100
   ㉰ 중소기업외의 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: 100분의 50 + (1-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)
5. <16>란에는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재합니다.